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10. 2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07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6년 10월 27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청소행정과장 김정일

가. 제안이유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, 재활용품 수집인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, 민간수집상 판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,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및 2조)
- 구의 책무,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(안 제3조 및 제4조)
 -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 근거 마련
 -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조사 실시
- 재활용품 수집인인의 선정 및 임무 (안 제5조 및 제6조)
 - 재활용품 수집인의 선정

-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중에서 수집인 선정
- 재활용품 수집인의 임무
 -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,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수집 · 판매
- 비용의 지원 등 (안 제7조)
 -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집인의 수집보상금 및 안전장비 등 지원

3. 검토보고 (김은모 전문위원)

- 동(同) 조례안은 2016. 8. 11.~ 8. 31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 문제점도 없으며, 마포구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(142명)의 재활용품 수집사업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, 저소득층 및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
- 담당부서에서는 다만, 조례 시행 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내고장 마포 등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상금 지원 및 안전장비 물품구매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